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12.27.(화) 조간 (인터넷) 12.26.(월) 12:00	-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담당자	주무관	이세종 (044-204-7444)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

□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택 특별공급 지침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자 우대 강화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 현행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점수	5

⇒

< 개정 >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0	3	6	9	12	15

②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 → 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 → 4점, '기사'는 2점 →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가점항목 배점표 –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

우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기술·기능 인력 및 핵심인력	7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5)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5) ■ 우수숙련기술자(3)	택 1
		■ 성과공제만기자(2)	
자격증 보유	3	■ 기술사 또는 기능장(3) ■ 기사 또는 산업기사(2) ■ 기능사(1)	택 1

⇒

우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기술·기능 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5) ■ 우수숙련기술자(3)	택 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3) ■ 성과공제만기자(2)	
		■ 기술사 또는 기능장(4) ■ 기사(3) ■ 산업기사(2) ■ 기능사(1)	택 1

③ 수상경력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현 행 >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5	■ 훈·포장(5)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

< 개 정 >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5	■ 훈·포장(5)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3)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2)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 1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공급('04년~)

* (근거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36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 **(추천자선정)** 신청자중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추천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하고, 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 **(지원절차)**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

○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sanhakin/)

○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를 산정 →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추천

< 입주자모집 절차 >

대상자 추천요청	→	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	→	대상자 추천	→	입주자격 조사·검증	→	당첨자 선정·발표
사업주체 (건설사 등)		지방중기청		中企 근로자		지방중기청		사업주체		사업주체

참고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배점기준**

□ 개정 배점기준표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2)		
정책적 우대	(20)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 제조 소기업 □ 뿌리산업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등	10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 우수숙련기술자 : 3점	택1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3점 □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4점 □ 기사 : 3점 □ 산업기사 : 2점 □ 기능사 : 1점 ※ 유리한 한 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택1	
수상경력	5	□ 훈·포장 : 5점 □ 대통령·총리 표창 또는 상장 : 4점 □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 중복 불가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택1	
지침 운영상 가·감점	(25)			
주택건설지역 재직	5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 년 ※ 산식 : 무주택기간 3년마다 3점 ※ 신청자가 만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 자녀 수 1명 : 1점 □ 자녀 수 2명 : 3점 □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 1년내 신청 : –10점 □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20			

□ 개정 전·후 배점기준 비교

< 현행 배점기준표 >

항목	계	재직기간	정책적 우대					지침 운영상 가·감점		
		중소기업 재직	제조 소기업,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핵심인력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건설지역 재직	무주택 기간	추천받은 후 미청약
배점	110	75	5	7	5	3	5	5	5	-10
비중	100%	68.2%	4.5%	6.4%	4.5%	2.7%	4.5%	4.5%	4.5%	-

⇓

< 개정 배점기준표 >

항목	계	재직기간	정책적 우대			지침 운영상 가·감점			
		중소기업 재직	제조 소기업,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 및 자격증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건설지역 재직	**무주택 기간**	추천받은 후 미청약
배점	**120**	75	5	**10**	5	5	5	**15**	-10
비중	100%	62.5%	4.2%	8.3%	4.2%	4.2%	4.2%	12.5%	-